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1.7.20.)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진상규명 신고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제4조, 5조)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위원회에 두는 간사 및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7조, 제8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와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다. 희생자·유족의 신고 및 심사·결정 등(안 제10조, 제11조)

-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로 정한 신고서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제출
- 신고기간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로 규정
- 위원회는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 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

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있어 객관성 확보와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규정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

바.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8조)

- 재심의의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9조)

-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1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의결사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법제처장·전라남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하며,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한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진상규명 신고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상규명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라남도 조례에 정하는 진상규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실무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구술로 신고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인은 실무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신고인이 구술로 신고를 취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실무위원회는 신고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한다.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다.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

2.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희생자(수형인)·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수형인)·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제2호다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2호다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해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11조(심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명부 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의결된 사람의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기획단의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수순천10·19 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중에서 임명하고, 단원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기획단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약간인의 전문위원을 두되,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향후 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희생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56만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③ 의료지원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6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재심의)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20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별지 제1호서식] 희생자(후유장애인) · 유족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 유족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희생자(수형인) · 유족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피해상황	발생 일시	당시 나이	당시 직업
		주요 내용		

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

후유장애 내용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2쪽에 작성
향후 치료비	[] 필요 [] 불필요
간호비	[] 필요 [] 불필요
보조장구 구입비	[] 필요 [] 불필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후유장애인)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2)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3.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후유장애 내용				
인적 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소
	()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210mm×297mm[백상지 80g/㎡]

보증서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 별	등록기준지(주소)	비고
	()				
확인 사항		※ 사건 당시 상황(또는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증명자료 첨부 등)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생년월일

보증인: 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고사유	[] 사망 년 월 일 사망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 2명 이상일 경우 별지 제3호서식(3쪽 중 제2쪽)을 사용		사망(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희생자						
성명(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고	[]사망	년 월 일	사망			
사유	[]행방불명	년 월 일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희생자						
성명(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고	[]사망	년 월 일	사망			
사유	[]행방불명	년 월 일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희생자(수형인)·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피해 상황	발생 일시	당시 나이	당시 직업
		주요 내용		

수형사항 ※ 구체적인 경위는 별지 제4호서식 3쪽 중 제2쪽에 작성

형 신고일	복역 장소	형량	수형 내용	출소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수형인)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형사실 내용				
희생자 인적 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소
	()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 [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희생 유형	희생자 결정일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유족	성명 [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의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의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뒤쪽)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대상자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희생자 명부번호		희생자 결정일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부모	성명 등록기준지	부: 모:
신청구분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내용	등재(정정)할 사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심의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의				
희생자	성명(한글)		생년월일	성별	
	(한자)			[] 남 [] 여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피해 상황	발생 일시		당시 나이	당시 직업
주요 내용					
신청사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67